

##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22일

경상북도지사

### 1. 행정처분 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	처분근거
(주)세영산업 (권기주)	토목건축 공사업 (16-0334)	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, 지하101호 (세영빌딩)	「건설공사대장 미통보」 안동 용상동 1179-23 외 2필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	과태료 부과 (금40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9조 제3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